

의안번호	제 7 호
의결년월일	1998. 8. 24
의결사항	원안가결

발 의 자	송인옥의원외 3인
제출년월일	1998. 8. 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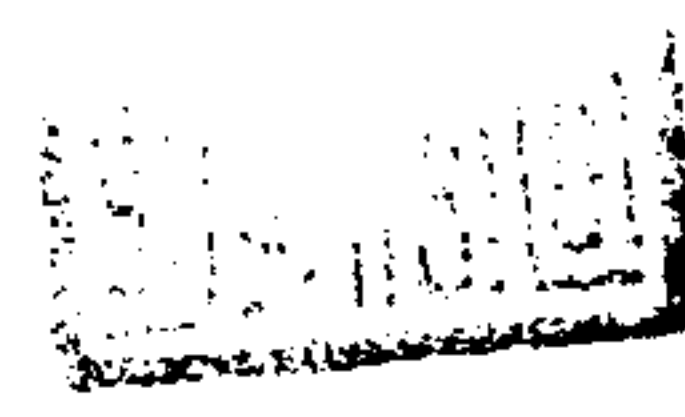
제75회 보은군의회(임시회)회기결정의 건

수신 의장

제목 제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
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안건 1부. 끝



발의자 : 동 인 우 (인)
(찬성의원서명 : 붙임참조)

■ 제안설명

- 제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이번 임시회는 지난 8. 12일 우리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. 때문에 피해주민 위로와 조속한 수해복구 추진으로 실의에 잠겨있는 주민을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되도록 하기위하여 “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” 운영하고자 합니다.
-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“제75회 보은군의회 (임시회)회기를 결정”하고 이어서 “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및 운영계획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.
-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“보은군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”외 5건의 부의안건을 다루고자 제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8. 8. 25일 1일간으로 할것을 제안합니다.
- 기재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議 事 日 程(案)

第75回 報恩郡議會(臨時會)

'98. 8. 25.(1日間)

日 時	次 數	附 議 案 件	備 考
'98. 8. 25(화) 11 : 00		○개 회 식	
'98. 8. 25(화) 11 : 15	1	1. 제75회보은군의회(임시회)회기결정의건 2.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의 건 3.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(안) 4.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 5.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 6.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7. '98 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(안) 8. 보은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(안)	내 무 과 재 무 과 재 무 과 재 무 과 재 무 과 환경보호과

의안찬성의원 서명

성명	서명	(인)
김민수	김.	
우재명	우	
정재홍	정	
		